동작구의회공고 제2022-20 호

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

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 제2항(결산서 등의 제출)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3일

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장

1. 검사기간 : 2022. 4. 1. ~ 4. 30.

2. 검사위원

직 위	성 명	비 고
대표위원	김 명 기	동작구의회 의원
위 원	고 성 삼	공인회계사
위 원	진 광 희	세무사
위 원	이 문 원	세무사
위 원	이 민 영	세무사

3. 검사의견서 : 따로 붙임